

이창한 / 5월 / 기초GS / 6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56358	23	13.5	36.5	1	0.63%	158
561120	22.5	13.5	36	2	1.27%	
561886	22	14	36	2	1.27%	
563057	21	15	36	2	1.27%	
561307	23	12.5	35.5	5	3.16%	
556203	21.5	13.5	35	6	3.80%	
561090	22	13	35	6	3.80%	
561360	21.5	13.5	35	6	3.80%	
562759	24	11	35	6	3.80%	
563185	23	12	35	6	3.80%	
561148	23	11.5	34.5	11	6.96%	
561132	23	11	34	12	7.59%	
561373	20.5	13.5	34	12	7.59%	
561891	22.5	11.5	34	12	7.59%	
561900	20.5	13.5	34	12	7.59%	
562503	22.5	11.5	34	12	7.59%	
561129	23.5	10	33.5	17	10.76%	
561298	21.5	12	33.5	17	10.76%	
111111	22.5	10.5	33	19	12.03%	
561094	19.5	13.5	33	19	12.03%	
561938	22	11	33	19	12.03%	
562938	23	10	33	19	12.03%	
556409	21	11.5	32.5	23	14.56%	
556412	21.5	11	32.5	23	14.56%	
559611	23	9.5	32.5	23	14.56%	
561283	21	11.5	32.5	23	14.56%	
561906	22.5	10	32.5	23	14.56%	
561914	22	10.5	32.5	23	14.56%	
561936	21	11.5	32.5	23	14.56%	
556399	21	11	32	30	18.99%	
557152	24	8	32	30	18.99%	
561271	22.5	9.5	32	30	18.99%	
561293	20	12	32	30	18.99%	
561320	22.5	9.5	32	30	18.99%	
561402	23.5	8.5	32	30	18.99%	
561903	21	11	32	30	18.99%	
556312	20.5	11	31.5	37	23.42%	
561137	20	11.5	31.5	37	23.42%	
561943	21	10.5	31.5	37	23.42%	
556205	22	9	31	40	25.32%	
562349	22.5	8.5	31	40	25.32%	
561169	20	10.5	30.5	42	26.58%	

561278	19.5	11	30.5	42	26.58%
561431	21	9.5	30.5	42	26.58%
561897	18	12.5	30.5	42	26.58%
561907	20	10.5	30.5	42	26.58%
561933	22	8.5	30.5	42	26.58%
561935	18.5	12	30.5	42	26.58%
562164	19	11.5	30.5	42	26.58%
561103	20	10	30	50	31.65%
561253	18.5	11.5	30	50	31.65%
561270	19.5	10.5	30	50	31.65%
561349	23.5	6.5	30	50	31.65%
561904	22.5	7.5	30	50	31.65%
561944	20	10	30	50	31.65%
561947	19.5	10.5	30	50	31.65%
561955	20	10	30	50	31.65%
562262	19	11	30	50	31.65%
563605	22	8	30	50	31.65%
561105	19	10.5	29.5	60	37.97%
561118	20	9.5	29.5	60	37.97%
561121	22.5	7	29.5	60	37.97%
561171	19.5	10	29.5	60	37.97%
561203	23	6.5	29.5	60	37.97%
561234	20.5	9	29.5	60	37.97%
561259	21.5	8	29.5	60	37.97%
561930	19	10.5	29.5	60	37.97%
561939	21	8.5	29.5	60	37.97%
563268	21	8.5	29.5	60	37.97%
556213	18	11	29	70	44.30%
556383	19	10	29	70	44.30%
561170	17	12	29	70	44.30%
561214	20	9	29	70	44.30%
561365	19	10	29	70	44.30%
561894	16.5	12.5	29	70	44.30%
561910	17	12	29	70	44.30%
556214	15.5	13	28.5	77	48.73%
556282	18.5	10	28.5	77	48.73%
561238	19.5	9	28.5	77	48.73%
561419	18.5	10	28.5	77	48.73%
561893	19.5	9	28.5	77	48.73%
561898	21	7.5	28.5	77	48.73%
562590	19.5	9	28.5	77	48.73%
556236	18.5	9.5	28	84	53.16%
556382	20	8	28	84	53.16%
561149	21	7	28	84	53.16%
561911	16.5	11.5	28	84	53.16%

561919	21.5	6.5	28	84	53.16%
561942	21.5	6.5	28	84	53.16%
556434	19.5	8	27.5	90	56.96%
561218	21	6.5	27.5	90	56.96%
561276	19.5	8	27.5	90	56.96%
561899	16.5	11	27.5	90	56.96%
561912	16.5	11	27.5	90	56.96%
561097	22.5	4.5	27	95	60.13%
561217	19	8	27	95	60.13%
561889	22	5	27	95	60.13%
561290	14	12.5	26.5	98	62.03%
561317	18.5	8	26.5	98	62.03%
561934	17.5	9	26.5	98	62.03%
561937	19	7.5	26.5	98	62.03%
561258	15	11	26	102	64.56%
556360	16	9.5	25.5	103	65.19%
556397	16	9.5	25.5	103	65.19%
561173	17	8.5	25.5	103	65.19%
561229	15	10.5	25.5	103	65.19%
561949	23	2.5	25.5	103	65.19%
556305	15	10	25	108	68.35%
561165	15	10	25	108	68.35%
561896	16	9	25	108	68.35%
562993	14	11	25	108	68.35%
563064	16	9	25	108	68.35%
563426	15	10	25	108	68.35%
561134	20	4.5	24.5	114	72.15%
561285	17.5	7	24.5	114	72.15%
561287	16	8.5	24.5	114	72.15%
561908	15.5	9	24.5	114	72.15%
556298	13	11	24	118	74.68%
556499	17.5	6.5	24	118	74.68%
561885	16	8	24	118	74.68%
561915	13.5	10.5	24	118	74.68%
561929	16	8	24	118	74.68%
556272	15.5	8	23.5	123	77.85%
561902	16	7.5	23.5	123	77.85%
561913	16.5	7	23.5	123	77.85%
562006	16	7.5	23.5	123	77.85%
556373	20	3	23	127	80.38%
556311	21.5	1	22.5	128	81.01%
559375	15	7.5	22.5	128	81.01%
561098	16	6.5	22.5	128	81.01%
561941	15	7.5	22.5	128	81.01%
561235	17	5	22	132	83.54%

561288	11	11	22	132	83.54%
561905	18.5	3.5	22	132	83.54%
562692	12.5	9.5	22	132	83.54%
562854	13	9	22	132	83.54%
561264	13.5	8	21.5	137	86.71%
561256	13	8	21	138	87.34%
562251	16	5	21	138	87.34%
559826	11.5	9	20.5	140	88.61%
561113	14.5	5	19.5	141	89.24%
561289	17.5	2	19.5	141	89.24%
561887	9.5	10	19.5	141	89.24%
562289	13	6.5	19.5	141	89.24%
561960	19	0	19	145	91.77%
562161	7.5	11	18.5	146	92.41%
562975	6.5	11.5	18	147	93.04%
556408	9	8.5	17.5	148	93.67%
562009	7.5	9	16.5	149	94.30%
556376	9.5	6	15.5	150	94.94%
556377	9	6.5	15.5	150	94.94%
556483	7	8.5	15.5	150	94.94%
563382	8	7.5	15.5	150	94.94%
556301	8.5	5	13.5	154	97.47%
556430	13	0.5	13.5	154	97.47%
561302	6.5	5	11.5	156	98.73%
561294	7.5	3.5	11	157	99.37%
563482	8.5	1	9.5	158	100.00%

[문제 1]

I. 서론(1)

1. 부정청탁

상계행위를 상습 아닌 방어행위라면 민중 혁명적인  
가면극이 생기므로 (제2(6)조항) 상습처럼 취급해, 상  
중 상계행위로 규정하는 처분으로 불합리(하)하므로 위  
구성을 유추해 가능 하는지 문제된다.

2. 중벌제기 의의, 취지, 요건

①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  
하지 못한다(제259조). ② 선형제인 재판통일을 위한  
것이다. ③ 인권을 전횡한 당사자 상습의 등인,  
재판 계속 중 계속제기이다. ~~④ 상계행위를 민중 혁명적  
가면극이 생기므로, 상 중 상계행위로 규정하는 처분~~

3. 항소

(1) 유죄정당 부정소

상계행위를 상습이 아니고 인권의 방어행위이므로  
상계행위로 규정하는 처분으로 변호제기하든 중벌제기가  
아니라 한다. 상계행위를 재가 검찰이 승소판문  
상계 한 민중이 인권을 근거로 한다.

(2) 유죄정당 긍정소

판문 민중 불신행위를 위해 중벌제기라고 한다.



1. | 상계로 작성한 채권 조항 판단에 는 (판결)이 다른  
점을 근거 한다. (제216조 2항)

4. 판결

(1) 변상채권형

1.5 | 변상채(1)인 채권으로 상계할 경우 채권부는 이복·이음·  
변상채권을 시도하여 가압류 받은 행위 및 상계관계  
조항이 비당작성, 그리고 변상채권 계속 중인 채권  
가등채권으로 하는 상계항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수 있다

(2) 상계상환채권

1.5 | 변상가치로 명백한 채권인 소용에서 상계항한 채권은  
상계채권 중 동일한 채권이 가한 상계를 변상의 소·변상채  
제(3)항은 것도 가능하다고 하여 부쟁의 입장이 다

5. 경판

1.5 | 상계상환채권에서 상계항한 조항이 (판결) 항쟁으로 인정하지 않  
음에도 변상을 위하여 상계항한 채권과 권리변해 타면이므로  
부쟁의 (타당)이다.

6. 가등채권

0.5 | 상계상환채권에서 가등채권으로 상계항한 조항이라도 그 계속 중  
동일 채권으로 변상채권은 허용된다. 즉 중복채기 아니며 적법하다.

0.5/10

2. 심판(2)

1. 심판장기

심판장기 제정 유효성이, 그중에서 심판장기 만드는데  
만족 할수있어 기판(3, 4)(02 (제21622호) 심판장기  
제정후 / 제정 후 심판장기에 제정된 기판이 이행 구제를  
위치가 재심 금지되는지 묻게된다.

2. 심판장기 상정, 제정 유효가부

"심판장이 법원에 신청한 것은 심판장 등의 법원  
야 하고 갖는 성격이 다르. / 법원법으로서의 심판장  
수정권 같은 행정적인 것을 전제로 행해지는 예비적 행정  
으로서 심판장 종류의 것이 제정할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심판장에서도 심판장기 제정 유효하다.

3. 제정권자 범위 의미. 금지

법원 결정판으로 인은 뒤 신청하는 사항을 같은 심판장기하  
지 못한다. (제21622호). / 이는 신청으로 판정에 들인 법원  
223 부활되는 것과 결정판으로 승낙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4. 제정권자 범위

0.5 / 제정권 당사자 심판장이 동일하고, 제정권이있도 동일  
하여, 법원 결정판으로 승낙을 행사하는 경우야한다.

5. 사안의 경우

1.1) 사립학교법에 상계행위 보충은 법률 다음 항목에  
서 상계행위를 정하였어도 이는 행위행위의 정리에  
불과하여 재증거유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법  
등인한 재증거에 관한 신문을 비롯한 제항 수 있다.

6. 사안의 경우

0.7) 甲의 행상 상계행위 정리 후 변호 제기는 재증거  
유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변호 정법이다  
%  
%  
%

7. 사안(3)

1. 조장정리

1) 기판정리란 확정된 중급판결의 내용이 갖는 효력에 따른  
구속력이고, 행정, 민정행은 권위로 한다. 판결 확정된  
이므로 기판정리가 확정에 적용가능하며 권위로, 개별적  
행위 권위로 하여 상계행위에 기판정리 행정의 효력 문제된다

2. 상계행위 정리시 상판가복

1.1) 판결은 상계행위 정리시 법원은 중급판결의 위력상 이를  
상판할 수 없다고 하고, 다른 판결은 상계(민간사)로  
주요한 것을 볼 수 없이 판결하되 중급판결의 위력의 위력  
이 있다고 하는데, 위력상 문제이므로 후자가 타당하다.



이처럼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판결 인정된 후자가  
존재한다.

2. 기판결 객관적 범위

(1) 판결 객관적 범위

1.1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및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기판결 효  
력을 갖는다. (216조 1항). 당사자 수의 관행이나 판결의  
범위를 판결의 효력을 신속히(결론대수 있게 하기) 5항이다.

(2) 판결의 효력 범위 중 승계행위

1) 기판결 인정과 취지

1.5 판결의 유 효 중 판결이 아닌 상계 주장은 판결이 성립  
되지 아니한 판결을 기판결 갖는다. (216조 2항)  
이해 대해" 판결 확정 시 상계주장에 대한 판결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 청구권이 대한 판결이 효력이  
적 부력이 있기 때문이다."

2) 승계행위 기판결 발생요건

2 ① 자동채권이 전환된 경우이고 ② 자동채권이 상계물  
로 상환되는 채권 전환 또는 그와 실질적 동등한 경우에  
③ 자동채권자의 승계여야 한다.

4. 판결의 범위

자동채권인 무 승계행위가 철회됨으로써 판결되지 않은



1. 특허 기판권이 발생하지 않아 후순에 다치지 않는다

4. 부분 권리

0.5 (특허 심판청구 기판권이 다치지 않으므로 다른 출원  
판결에서 특허 청구 인용이 가능하다. (결)

7.5/10

(문제 2)

2. 선행(1)

1. 선행청구

0.5 (후순의 매정 청구권이 기판 매정영도 청구에서 선행의  
매정특허의 특허권에 기한 매정영도 청구권을 변경할  
것이 선행청구로서 적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불확실함

2. 선행청구의 요건

0.5 (청구기초의 동일성, 정수를 정확히 지면시키지 않음, 것,  
사상상 불충족, 변경의 임의성인 동등권·상동권  
인 것은 갖추어야 한다 / 기존 동일성은 청구원의 다른

1.5 (청구원이 같거나 기존 청구의 변형일인 경우 등 동일한  
사상 또는 구성요소를 이익에 관한 분쟁이 있어 권리행방  
에 지장이 있는 경우이다.

3. 선행의 경우



청구항지는 배정 범위로 동일하고 청구항의 본질적인 권리관계에  
 대우관계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청구항이 동일하고,  
 사실효가 증빙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지원되는  
 사항도 많다. 그상은 사실상이며 변경사항도 구비했다  
 변경사항이 해당성 신변경에 따라 동의는 안고 아님  
 따라서 관련 변경을 적법하다.

9.5/9

두. 부분(2)

1. 변경항

0.5 (변경항 변경 후 다시 청구항은 서로 같이 청구항  
 에게비적임, 대우관계 기한 배정영은 청구항은 서로  
 같은 범위의 청구항이 제각각에 적용되는지 불분명

2. 두번에 변경한 것이 신변경으로 적법한지 여부

(1) 신변경 의미

판례인 구이름은 신변경상 구의를 신변경으로 본다.

따라서 사안의 변경은 권리 변경으로 신변경 변경이므로  
 신변경에 해당함

(2) 신변경 요건

청구항에 동일성, 청구항의 안됨 것, 사실상 변경항목  
 적임 것, 변경사항 같음 것 (안됨 - 제262조, 253조)

(3) 신변경 경우





0.1 ( )  
 고형수 분말에서 수분을 50% 이상 함유하지 않으므로  
 고형수 촉매가 수분이 있고 보습이다. 따라서  
 '보습 촉매'로 특성을 가진 것이 좋다.

A. 촉매 반응

0.1 ( )  
 촉매 반응 부분은 계층구조에 의해 이루어져 촉매 반응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예비 반응이 필요하다.

7.5/10

Tu. 수분(%)

1. 수분(%)

( )  
 고형수 분말 촉매 예비 반응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확인(수분)이 필요하다.

2. 고형수 분말 반응

(1) 촉매 반응

( )  
 고형수 분말 수분 촉매는 고형수 촉매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고형수 분말이 수분 촉매가 된다.

0.1 ( )  
 2) 수분

( )  
 수분에서 촉매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이 가능  
 하는 구조이다.

(3) 수분

( )  
 고형수 촉매 특성이 있다면 가능하다.



## 3. 항소기간 판결 재범여부

판례는 1심판결을 소극적으로 상고하고, 항소심 상고대  
 상을 변경되어 <sup>판</sup>소극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항소심을 1심판결 인용을 지극히 관 항소기간 판결도  
 불가능하다.

## 4. 상소의 취지

구판 1심판결은 교판의 변경으로 상고하였으므로, 2심에서  
 교판된 때의 취지에 이응하는 상정을 상고의 상은  
 판단해야 하며 항소기간을 불응한다. L결7

2.5/5